

第124回(臨時會) **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** 第2號(附錄)
本會議會議錄

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

目 次

1. 住宅再開發 區域指定 및 事業計劃決定(案) 意見聽取 結果報告書 1面
 2. 都市計劃施設 公園決定(案) 意見聽取 結果報告書 5面

1. 住宅再開發 區域指定 및 事業計劃決定(案) 意見聽取
 結果報告書

2002. 7. 25
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 재무건설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2년 7월 9일 · 종로구청장
 나. 회부일자 : 2002년 7월 15일
 다. 상정일자 : 제124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(2002. 7. 25) 재무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제안설명자 : 도시관리국장 황 의 진)

가. 제안이유

-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사업계획결정(안) 조서
 1) 재개발구역지정 조서

지정구분	사업의 구분	구역의 명칭	위 치	면 적(m')	비 고
신 규	주택재개발사업	승인제5주택 재개발구역	종로구 승인동 766번지 일대	14,542.39	

2) 부분별 사업계획결정조서

(가) 토지이용계획

구 분	명 칭	면 적(m²)	비 율(%)	비 고
도시계획용도지역	계	14,542.39	100	
	제3종일반주거지역	14,542.39	100	
택지 및 공공시설 (도시계획시설)	계	14,542.39	100	
	택 지	12,233.19	84.12	
	공공시설	도로 - 1,524.11	10.48	
		녹지 - 785.09	5.40	

(나)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·정비계획

1) 도 로

결 정 구 분	구 모				기 능	사용형태	연장 (m)	위 치		비 고
	노 형	세분류	번호	폭원 (m)				기 점	종 점	
기정	중로	3류	1	12	국지도로	일반도로	160	승인동 1012	승인동 766	
변경	소로	2류	1	8	국지도로	일반도로	133	승인동 1031	승인동 181-134	구역내
변경	소로	2류	2	8	국지도로	일반도로	70	승인동 766	승인동 801	
기정	소로	3류	1	4	국지도로	일반도로	36	승인동 1012	승인동 1031	

2) 면적시설

결 정 구 분	시설의 종류		위 치	면 적(m²)	비 고
	명 칭	세분류			
신설	녹지	경관녹지	승인동1013외 26필지 (사업계획결정도 참조)	785.09	

(다) 건축물의 정비,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

1) 기존건축물의 정비, 개량계획

결정 구분	지구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 치	정비개량계획(동)					비고
	명칭	면적(m ²)	명칭	면적(m ²)		계	존치	개수	철거후 신축	철거 이주	
신설	송인 제5구역	14,542.39	송인 제5구역	12,233.19	송인동766 번지일대	141	-	-	141	-	

2) 건축시설계획

결정 구분	지 구 구 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 치	주된 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 이 층 수
	명칭	면적(m ²)	명칭	면적(m ²)					
신규	송인 제5구역	14,542.39	택지	12,233.19	766번지 일대	조합원 및 분양 아파트	26.42	261.43	62.4m 지하2층 ~지상 23층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			전용면적		층별주택 공급수			비율(%)	
			m ²	평형	층수	동수	세대수		
			59.95	24평형	10~18	3	133	40.61	
			84.98	32평형	15~23	2	122	40.00	
			112.0	42평형	8~14	1	50	16.39	
			계			6	305	100	
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			- 본구역의 세입자 의견조사를 실시한 바, 대부분의 세입자가 주거대책비를 희망하므로 주거대책비를 지급하고 일부 임대주택을 희망하는 자는 타구역으로 입주토록 계획하며 -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토록 함.						
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		건축법규에 의한						

(라) 건축부지 정비계획

결정 구분	구역명	위 치	면적(m ²)	가 구 계 획			획 지 구 분		지구 또는 부지의 주된용도
				세대수 (세대)	연면적 (m ²)	건축면적 (m ²)	필지	면적(m ²)	
신설	송인 제5구역	송인동 766번지 일대	14,542.39	305	44,120.91	3,232. 01	154	14,542.39	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

3. 質疑 및 答辯 要旨

(질의자 : 오 금 남 위원, 김 복 동 위원)

(답변자 : 황 의 진 도시관리국장)

문) 주민의견서 제출 내역을 보면 송인동 766번지 일대 송인5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있어 29인의 반대의견이 있는데 어떤 내용의 의견입니까?

답) 송인2동 II-7구역 상가 건물주들이 재개발구역지정에서 제외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.

문) 상가 건물주들의 재개발구역지정에 반대 의견이 있다면 상가와 주택을 별도로 분리하여 재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?

답)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구획분할은 곤란합니다.

문) 그러면 지금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까?

답) 그렇지는 않습니다. 시의 최종 결정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주민의 반대의견을 충분히 전달토록 하여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4. 意見 採擇 : 없 음

5. 其他 必要한 事項 : 없 음